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88호 2019. 9. 27.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조 례

- 삼척시 조례 제1227호 삼척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 3
- 삼척시 조례 제1228호 삼척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 9
- 삼척시 조례 제1229호 삼척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15
- 삼척시 조례 제1230호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 ----- 23
- 삼척시 조례 제1231호 삼척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6
- 삼척시 조례 제1232호 삼척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삼척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 29
- 삼척시 조례 제1233호 삼척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35
- 삼척시 조례 제1234호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 ----- 37
- 삼척시 조례 제1235호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 42
- 삼척시 조례 제1236호 삼척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43
- 삼척시 조례 제1237호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47
- 삼척시 조례 제1238호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 50
- 삼척시 조례 제1239호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 53
- 삼척시 조례 제1240호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 56

- 삼척시 조례 제1241호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 ----- 59
- 삼척시 조례 제1242호 삼척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79

규 칙

- 삼척시 규칙 제581호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81
- 삼척시 규칙 제582호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82
- 삼척시 규칙 제583호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90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 12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109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832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처분 공고 ----- 112
- 삼척시 공고 제842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113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제21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 9. 10.)에서 의결된 삼척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9년 9월 27일

삼척시 조례 제1227호(의원 발의)

삼척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식생활 교육 추진 이념에 따라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국민이 영위하고 있는 식생활이 자연의 혜택과 식생활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이하 “시”라 한다)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④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소중함, 친환경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는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국민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시 농수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⑥ 식생활교육은 식품의 생산과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⑦ 식생활 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강원도에서 수립한 식생활 교육 계획과 지역실정을 반영한 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가정, 학교, 어린이집,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을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계획 수립에 반영 한다.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 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식생활교육위원회)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삼척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 관련한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획감사실장, 복지정책과장, 산림복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보건소장, 삼척교육지원청의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 삼척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추천인
4. 농어업인 단체 추천인
5. 의사·영양사·조리사 등 관련 전문가
6. 요식업 관련 단체 추천인
7. 안전한 먹거리 관련 소비자 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대표
8.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단체 대표 및 전문가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나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이 한다.

⑥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
2. 식생활 교육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체험, 교육 및 홍보의 지원
3.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산 농수산 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 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지원
5. 학교 및 어린이집 등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식생활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운영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1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 9. 10.)에서 의결된 삼척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9년 9월 27일

삼척시 조례 제1228호(의원 발의)

삼척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5.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삼척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삼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 도시락 배달
 - 부식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 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점심·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급식 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통장·반장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홈페이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 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3. 이장·통장·반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 실시)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에 대하여는 선지원 후 사후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위생·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 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통장, 반장 또는 읍·면·동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제10조(급식아동 후원)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려는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아동급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인이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성명	관계	동거 여부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대상아동 1	성명	성별 [] 남 [] 여	취학 여부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생년월일 (세)
대상아동 2	성명	성별 [] 남 [] 여	취학 여부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생년월일 (세)
신청 의견	신청사유 (자세히 기재)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 여부)	* 중복 선택 가능 [] 연중 초·석식 : [] 초식 [] 석식 []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중식 [] 방학 중 중식	
	희망 급식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일반음식점 등 [] 도시락 배달 [] 푸식 배달 [] 기타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으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뒤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제21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 9. 10.)에서 의결된 삼척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9년 9월 27일

삼척시 조례 제1229호(의원 발의)

삼척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삼척시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의 증진과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2.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4.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5. “주요정책”이란 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민이 알아야 하는 사업·제도 등을 말한다.
6.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3.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관리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정책실명제 대상은 정책의 입안자·결재자·설계자, 용역연구 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자, 감독 공무원 및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로 한다.

③ 시장은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지정) ① 영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 기획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① 시장은 영 제63조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정현안(단·장기 비전사업, 시장 공약사업 등) 사업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투자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5천만원 이상의 주요 행사성 사업
5.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나. 시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6.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7.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8.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시민이 신청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 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참석자·발언내용·결정사항·표결내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 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기획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기획 총괄부서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명 이상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 없이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그 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의 위촉 해제, 수당 등은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 ①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관리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에서 통보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치)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사, 설계변경 등으로 정책수행자 또는 정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통보하고, 이를 삼척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변경사항이 통보되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수정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한다.

제12조(홍보 및 평가·포상) ① 총괄부서의 장은 삼척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를 위하여 담당부서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		⑤ 담당자	(남/여)
⑥ 선정기준		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 명칭 기재	'00.00.00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담당 ○○○주무관	
○ 내용	'00.00.00	○○○ 과장 ○○○ 담당 ○○○ 주무관 <관련자> ○○○ 시의원	

<기재항목>

-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 ⑥ 선정기준 : 시정과제 / 국민신청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법령 등 개폐 / 기타 中 택1
-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① 등록번호	② 정책사업명	③ 사업부서	④ 담당자(남/여)

<기재항목>

-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9-1, 2019-2)
- ② 정책사업명 : 사업명을 기재
-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E-mail 주소 : ☎(H.P) :
실명공개 신청 사업명	
신청사유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가능

제21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 9. 10.)에서 의결된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9년 9월 27일

삼척시 조례 제1230호(의원 발의)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별표 2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별표 26]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 관련)

▣ 영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더목,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카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제21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 9. 10.)에서 의결된 삼척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9년 9월 27일

삼척시 조례 제1231호

삼척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일반재원”이란 일반회계의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을 말한다.
2. “최근 3년”이란 결산년도의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1. 결산상 경상일반재원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동일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와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 중 큰 금액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주민의 복지 및 행정수요가 큰 특수시책과 긴급한 사업추진,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단,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제외하고는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2. 타 기금으로의 전출금
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고, 시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삼척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채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삼척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른 삼척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감사실장
2. 기금출납원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존속기한은 2023.12.31.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1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 9. 10.)에서 의결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삼척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9년 9월 27일

삼척시 조례 제1232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삼척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삼척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삼척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등급”으로 한다.

제2조(「삼척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개정) 삼척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제3조(「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나목 중 “1급~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4조(「삼척시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삼척시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조(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의학적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장애인
- ② “보호자”란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개정)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로 한다.

제6조(「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6호 중 “「장애인복지법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이 교부한 수첩을 소지한 사람”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삼척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삼척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제8조(「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나목 중 “1급~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9조(「삼척시 이사부사자공원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삼척시 이사부 사자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제10조(「삼척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삼척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별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1조(「삼척시 시민 제안 조례」의 개정) 삼척시 시민 제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지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에 등록기준지가 있는 사람

제3조제1항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13조(「삼척시 청소년 봉사상 조례」의 개정) 삼척시 청소년 봉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본적이”를 “등록기준지가”로 한다.

제14조(「삼척시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삼척시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소방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 「소음진동규제법」”을 “,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5조(「삼척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개정) 삼척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삼척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삼척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의2”를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분석평가서 등의 보고)”를 “(평가서 등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를 “성별영향평가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를”로, “삼척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삼척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를 “특정성별영향평가의”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삼척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삼척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나목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지 제1호 서식]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급(변경)신청서

등록중증 장애인 인적사항	주 소	성명	생년월일	장애 정도	지급계과			연락처
					예금주	은행명	계과번호	

「삼척시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보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읍·면·동장 귀하

[별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매점 자동판매기)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신청인	신청구분 (해당란에 √ 표시)	<input type="checkbox"/> 만 20세 이상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만 65세 이상 노인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input type="checkbox"/>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장애정도 (장애인의 경우)
	생활정도 (해당란에 √ 표시)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생계급여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미과세대상자 <input type="checkbox"/> 과세대상자	
	설치장소		
「삼척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따라 (<input type="checkbox"/> 매점 <input type="checkbox"/>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_____귀하			
첨부서류	1.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등 2. 위임장(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에 한함)		

제21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 9. 10.)에서 의결된 삼척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9년 9월 27일

삼척시 조례 제1233호

삼척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SNS 서포터즈 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SNS 서포터즈의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SNS 콘텐츠 생산에 대한 원고료 등 활동보상금
2. 활동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3. 임무수행을 위한 지역 관광지 등 시설견학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간담회 실시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SNS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SNS 서포터즈가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관광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시설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3조)제3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1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 9. 10.)에서 의결된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9년 9월 27일

삼척시 조례 제1234호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삼척시장”을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 중 “성실로서 맡은바 책무를”을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신상”을 “사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획득하기에”를 “획득하기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직무를 수행하면서”를 “직무 수행 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근무시간외의”를 “근무시간 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훈련의 경우에는”을 “훈련을 할 경우에”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자는 복무에 관하여”를 “공무원의 복무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를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공무원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관에게”를 “기관에서”로,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을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중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공무원이”로, “받은”을 “중인”으로, “파견근무자”를 “파견 근무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복무에 관하여”를 “복무”로,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해임 또는 파면된 공무원의 근무)”를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임 또는 파면된 공무원에 대하여는”을 “소속기관의 장은”으로, “소속기관의 장은”을 “해직된 공무원이”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앞에 “제2장 근무시간 등”을 삭제한다.

제17조 앞에 “제3장 휴가”를 “제2장 휴가”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제18조”를 “영 제7조제1항”으로, “자에 대하여”를

“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무원의”를 “공무 외의”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공무원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소속공무원이 연가원을 제출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8조”를 “영 제7조제1항”으로, “지급하고 연가에”를 “지급하는 것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별표3의 기준에 의한”을 “별표3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매월1일”을 “매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제5항 중 “의한”을 “따라”로, “제18조”를 “영 제7조 제1항”으로,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을 “경우 출석 수업기간에 대해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2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시장은 공무원”으로, “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가”

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로, “우리시”를 “시”로,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피로 하여”를 “피로하여”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무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에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8조 제2항”을 “영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인하여 피해”를 “피해”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고,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⑫ 공무원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5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⑬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가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자녀군입영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⑭ 법정 선거사무 수행을 위하여 선거일을 포함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은 선거종료일부터 5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에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26조 및 제27조)을 삭제한다.

제28조 앞에 “제5장 정치운동”을 삭제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1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21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 9. 10.)에서 의결된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9년 9월 27일

삼척시 조례 제1235호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학생이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행한 대학생으로서 학부장 또는 학장·총장이 추천한 자”를 “대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00만원을 초과한 장학금”을 “장학금”으로, “받을”을 “200만원을 초과하여 받은”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200만원 이하의 타 장학금(학비보조 포함) 수혜자는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총 지급액의 차액분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는 200만원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일반장학금 수혜자의 후순위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1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 9. 10.)에서 의결된 삼척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9년 9월 27일

삼척시 조례 제1236호

삼척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삼척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삼척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각 자활사업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
2. 지역특성을 반영한 당해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3. 자활근로 위탁
4.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해당업무 부서의 장, 지역자활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대표
 2.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표
 4.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대표
 5.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
-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해촉) ① 협의체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체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기관협의체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자활기관 협의체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협의체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상황,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자회의 구성) ① 협의체는 자활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 및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2. 읍·면·동·시청의 자활업무 담당 공무원
3.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4.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② 실무자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관리 방안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1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 9. 10.)에서 의결된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9년 9월 27일

삼척시 조례 제1237호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4호에 따른 지급액은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제7조제4호 중 “월 100,000원”을 “월 200,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지 제1호 서식]

보훈번호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p>「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삼척시장 귀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td> <td>수수료</td> </tr> <tr> <td>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td> <td>없음</td> </tr> </table>								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수수료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없음
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수수료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없음										
<p>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p>											

[별지 제2호 서식]

보훈번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국 가 보 훈 대 상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자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국가보훈대상자와의 관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p>「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삼척시장 귀하</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p>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훈처로부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될 경우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명예수당 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증(유족증)을 소유한 사람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p> <p>*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제21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 9. 10.)에서 의결된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9년 9월 27일

삼척시 조례 제1238호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1호에 따른 지급액은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제4조제1호 중 “월 100,000원”을 “월 200,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지 제1호 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 _____																		
																(전화번호 _____)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____년 ____월 ____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참전유공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별지 제2호 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참 전 유 공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명			예금종류																
	주소	우편번호 : _____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____년 ____월 ____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훈처로부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될 경우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명예수당 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증(유족증)을 소유한 사람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21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 9. 10.)에서 의결된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9년 9월 27일

삼척시 조례 제1239호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위치 및 명칭)”을“(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다)의 위치는”을 “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2호 중 “취업정보제공”을 “취업정보제공, 취업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상담 등 지원사항

제4조의 제목“(시설의 관리)”를“(관리 및 운영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인을 배치하거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근로자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며, 위탁 기간 등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를 “환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일반시민(저소득층 주민 우선)”을 “일반시민”으로, “자로”를 “사람으로 하며,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시에 이용하려는 자가 경합될”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을”로, “순서에 의한다”를 “순서로 한다”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8조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복지회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전의 제10조) 제5항 중 “관리·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각종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 단서 중 “다만, 시장”을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시장”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자체운영규정) ① 제4조에 따른 수탁자는 복지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체규정을 제정·개정할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 규정”을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0조”를 “제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4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4조를 제13조로 하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중전의 제14조) 제1항 중 “필요시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을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를 “사항을 관련”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6조) 중 “조례시행에 관하여”를 “조례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1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 9. 10.)에서 의결된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 장

2019년 9월 27일

삼척시 조례 제1240호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를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9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매월 가정용 12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요금을 감면하되, 구경별 정액요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수도 사용량의 12세제곱미터 이상 사용량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서 가구별 자체정산 등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별표 9 및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9]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중수도 설치)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시설개요	건물명		동수 및 층수	
	위치			
	사업비			
	사업기간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제4호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삼척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중수도 설계도
2.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
3. 중수도 사용계획서

[별표 10]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신청구분	신규() 해지()			
수용가	주소			
	성명		생년월일	
	수도전번호		연락처	
신청구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자녀가정 감면()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

삼 척 시 장 귀하

※ 주의사항
1. 상기 감면신청서 작성대상자 중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그 징수를 감면받은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제49조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함.
2.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변동(전입, 전출)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시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함.

첨부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1부.
다자녀가정 감면 : 주민등록등본 1부.

제21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 9. 10.)에서 의결된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9년 9월 27일

삼척시 조례 제1241호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은 배수설비 설치길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최대 300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배수설비 설치자가 공사시행을 요청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사용승인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경우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가 시행한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의 대행업자 지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①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산정기준 및 별표1-1의 업종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2에 따라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기한과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고, 그 납부기한도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신고신청서 제출 시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삼척시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 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 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①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전용 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량
3. 물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 신고량

③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중수도·재사용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를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로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하수배출량의 재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 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

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한다.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별표4-1의 산정 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으로 하며, 신축 후 1년 이내(사용승인일 기준)에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
2. 건축물 준공 1년 후 이루어지는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로 인한 합산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행위 전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 시는 새로 발생하는 오수량)
3. 건축주가 같은 사람(가족관계증명서 등재인도 같은 사람으로 본다)이고, 같은 번지 및 연이은 번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물별 오수량을 합산하여 산정 (단, 지번 분할이 된 연이은 건축물을 구입 후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을 할 경우에는 별도 산정한다)

4.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

③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4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단가를 결정하여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 금액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17조의2(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등) ①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따른 인·허가 시 개괄적인 금액을 통보하고, 사용승인 신청(임시사용승인 포함)시 최종금액을 산정 부과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②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임시사용승인 포함)로 하되, 건축물의 용도·표시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4회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제17조의3(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① 제19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가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8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19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삼척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를 기준으로 산정 (다만,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내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4에 따라 산정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단가 산정에 반영되지 못한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은 원인가에게 원인자부담금 부과 외 추가적인 공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원인자부담금은 자본적 지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별표4-2를 참조하여 사용한다.

제21조(과오납금의 처리 등) 시장은 공공하수도사용료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등 과오납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세부적인 감면절차 및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에 따른다.

제24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100분의 3의 요율로 일할 계산한 가산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부과하고, 연체료는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 가산금 = 미납요금 × 3/100 × (연체일수/월력일수)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 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5조(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26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제27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과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그 취득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와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용도변경 및 타행위 개발계획 등의 인·허가를 신청하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최종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 및 준공 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타행위의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제7조제1항)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치 신고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재질	염화비닐관, 주철관, 흙관, PC, 도기, 기타	접속방법
		평균관경	∅ mm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설치위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통 반)		
	배출수량	m ³ /일		
	공사착공 연월일	년 월 일	공사준공 예정일	년 월 일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공공하수도 복구방법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 시작 신고	배출수량 및 수질	수량 (m ³ /일)		
	수질(mg/l)	BOD: , COD: , SS:		
사용시작일	년 월 일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 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수수료	없음	
작성 방법				
1. 배출수량에는 법 제36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 ²]				

[별지 제2호 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제7조제2항)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배수설비 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설치위치	시· (읍·면·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 ³ /일	*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		
관영	검사항목	1차 검사 (검사일자)	보완 사항	2차 검사 (검사일자)	비고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X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수수료	
	2.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 1/500 도면)			없음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10조제2항)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종	단계별 사용량 (㎡)	연도별 단가 (원 / ㎡)		
		2019. 9월 고지분 부터	2020. 9월 고지분 부터	2021. 9월 고지분 부터
가정용	1~20	90	170	300
	21~30	120	210	380
	31이상	210	370	640
일반용	1~50	130	260	480
	51~100	370	680	1,270
	101~300	420	770	1,420
	301이상	480	890	1,650
대중탕용	1~200	150	300	580
	201~300	260	500	960
	301~500	310	610	1,170
	501이상	400	760	1,470
전용공업용	㎡당	140	260	470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문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별표 1-1]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 (제10조제2항)

업종별	구분내용	비고
가정용	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1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고아원, 영아원, 양로원, 탁아소등 사회복지시설과 국가유공자단체	삼척시 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가정용 해당업종
일반용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수용가	삼척시 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일반용 해당업종
대중탕용	일반 목욕탕업	삼척시 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대중탕용 해당업종
전용공업용	공업단지 등의 공업지역에 원수로서 공급하는 수도전	삼척시 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전용공업용 해당업종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제9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총인 또는 총질소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항목별 산출방식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text{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 \times \text{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times \frac{1}{1000} \text{(kg/g)} \\ \times \text{1일조업시간(시간/일)} \times \text{30일} \times \text{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BOD 또는 COD) + (총인 또는 총질소) + SS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제16조)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주 1. 구분 및 산정기준은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 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4]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17조제1항)

○ m³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

$$▷ a = (1 + R_1) \times \dots \times (1 + R_N)$$

R(%) :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N : 공공하수도 준공 이후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 간선관로]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시·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별표 4-1]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예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오수량 : m³/일)

구분	최초 행정행위 시 오수발생량(A)	1차 증축·용도변경			2차 증축·용도변경			적용방법			
		증가량(B)	오수량(C) (A+B)	부과량(D)	증가량(E)	오수량(F) (C+E)	부과량(G)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E)>10 전체부과		
						12	15	12	(B)+(E)<10 미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초과량부과		
						7	14	4	(E)>10 전체부과		
						11	18	11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A)+(B)+(E)<10 미부과		
						7	18	-	A)+(B)+(E)>10 초과량부과		
						11	22	11	(E)>10 전체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신축 후 1년 이내 건축물	5 (미부과)	3	8	-	(C)<10 미부과	1	9	-	신축 당시부터 10m ³ /일 이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과 형평성을 강도 높게 하려는 것임		
						7	5	12			
신축 후 1년 이내 건축물	5 (미부과)	7	12	12	(C)>10 전체부과	5	17	5			

-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 3. 각각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 4. 신축 후 1년 이내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량 전체부과

[별표 4-2]

원인자부담금 사용기준 (제20조)

1. 관로

원인자부담금 사용 가능	원인자부담금 사용 불가
하수관로 정비공사	하수도 준설토 처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도 준설사업
오·우수 분리벽 설치	하수도 준설물 처리
	하수암거 보수(수선)공사
	하수관로 고압제트 준설토 운반
	하수관로 보수(수선)공사

2. 펌프장

원인자부담금 사용 가능	원인자부담금 사용 불가
펌프장 펌프 제작 구매 설치	노후 유입펌프 수선공사
하수중계펌프장 침사인양기 교체공사	우수 조정지펌프 수선공사
펌프장 조목스크린 제작 구매 설치	초기우수처리 펌프 수선
펌프장 호이스트 교체 공사	펌프장 신설수중펌프 수리
중계펌프장 배기 팬 증설 및 시설물 설치공사	펌프장 수중사류펌프 2호기 수리
중계펌프장 운영 판넬 및 전기실 CCTV 설치공사	펌프장 신설수중펌프 회전자수리
펌프장 ALTS(자동부하 전환 개폐기) 교체공사	펌프장 집수정 침사물 준설공사
펌프장 펌프기동반 노후 전기판넬 교체공사	
중계펌프장 초음파 수위계 교체공사	

3.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사용 가능	원인자부담금 사용 불가
침사지 세목스크린 교체	염색펌프장 펌프2호기 수리 공사
처리장 기존염색라인 펌프 교체설치	유입펌프 및 냉각수펌프 정기수선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송수관로 가압펌프 설치	유입침사지 소모성 부품 구매
처리장 송풍기 교체설치	침사지 역사이편 권양기 수선
하수처리장 2단계 송풍기 현장 제어반 구매 설치	하수처리장 침사제거펌프 수선공사
처리장 공장 초침 레이크스크린 및 부대설비 제작 설치	하수처리장 침사 인양기 및 세목스크린 수선공사
하수처리장 소화 농축조 슬러지수집기 교체	하수처리장 세목스크린 수선공사
처리장 슬러지 펌프 교체	처리장 미세목 스크린 부품제작 설치
하수처리장 방류 펌프 설치공사	처리장 초침 슬러지수집기 부품 구매
하수처리장 탈수동, 소화 농축조 탈취설비 설치공사	처리장 초침 및 잉여슬러지 펌프 부품 제작 구매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UPS) 및 제어설비 교체	하수처리장 포기용 송풍기 수선공사
하수처리장 2단계 5계열 용존산소 계측기 교체	하수처리장 송풍기 정기수선
하수처리장 2계열 생슬러지 유량계 교체	하수처리장 염소소독시설 수선공사
처리장 TMS관제시스템 데이터로거 교체	하수처리장 슬러지 계근대 개선 공사
슬러지 소각1호기 TMS 설비 교체	하수처리장 수전실 메인고압 변압기(154kv) 수선
처리장 낙뢰방지 설비 공사	하수처리장 송풍동외 무정전 축전지 구입
	수질계측 기기 소모품 및 수선비
	하수처리장 탈수기동 지붕층 방수도장 공사
	하수처리장 창호 교체 및 도장공사
	하수처리장 건축물 균열 및 누수 보수
	탈수기동 옥상방수면 크랙보수

제21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 9. 10.)에서 의결된 삼척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9년 9월 27일

삼척시 조례 제1242호

삼척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공하수도시설”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시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칭		위치	비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삼척 공공하수처리시설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3830-15(오분동)	
	도계 공공하수처리시설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1895	
	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266-6	
	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565	
	근덕 공공하수처리시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741	
	미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적벽길 118	
	월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232-35	
	청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1482	
	골말 공공하수처리시설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미로강변로 22	
	중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강원도 삼척시 수로부인길 343(중산동)	
	풍곡 공공하수처리시설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청옥로 4558	
	원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824-16	
	용화 공공하수처리시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210-30	
	고무릉 공공하수처리시설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고무릉길 25-18	
	장호 공공하수처리시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길 84	
	선흥 공공하수처리시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공촌길 137	
	고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고내로 50	
	광동 공공하수처리시설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2557-14	
갈남 공공하수처리시설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길 108		
초곡 공공하수처리시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길 313		
산양 공공하수처리시설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산양서원2길 24-85		
갈남2 공공하수처리시설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신남길 72-70		
갈천 중계펌프장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543-23(갈천동)	
도계 분뇨처리시설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2길 18-127	
자연재해대책시설	시가지지구 빗물펌프장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72(남양동)	
	사직지구 빗물펌프장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88-55(사직동)	
	읍상지구 빗물펌프장	강원도 삼척시 엑스포로 17(남양동)	
	호산지구 빗물펌프장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1길 87	

제12회 삼척시 조례규칙심의회(2019. 8. 13.)에서 의결된 삼척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9년 9월 27일

삼척시 규칙 제581호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직전학년”을 “직전학년(학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회 삼척시 조례규칙심의회(2019. 8. 13.)에서 의결된 삼척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9년 9월 27일

삼척시 규칙 제582호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교부 한다”를 “교부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규정에 의하여 특별설비”를 “특별설비”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8조 규정에 의거”를 “제4조에 따라”로, “별표 1의 위탁관리계약서를”을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로, “이를”을 “계약사항을”로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4호 서식까지와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지 제1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 1. 사용 시설명 :
- 2. 사용 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3. 사용 목적 :
- 4. 참석예정인원 : 명
- 5.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시설 :
- 6. 기타 사항 :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직업 (단체명) : 전화번호 :

삼척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 1. 주 소 :
 직 업(단체명) :
 성 명 : 생년월일 :
- 2. 변경내역
 가. 변경전 :
 나. 변경후 :
- 3. 년 월 일 귀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변경코자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삼척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 허가서

- 1. 사용자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 2. 사 용 시 설 :
- 3. 사 용 목 적 :
- 4.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5. 사 용 료

사용 시설명	사용료	산 출 기 초	비 고

6. 허 가 조 건 :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변경 허가서

1. 사용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2. 변경허가 내역 :

- 변경전 :
- 변경후 :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장 (직인)

[별지 제7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위탁 관리 신청서

성명(법인, 단체명)	(전화번호 : -)
-------------	-------------

소 재 지	
-------	--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복지회관 재산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구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견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위탁 관리 연장신청서

신청인(법인 단체명)		(전화번호 : -)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		
기간	당초	~	연장
사유			

위 사람(법인, 단체)이 수탁관리하는 복지관 위탁 관리 운영기간을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12회 삼척시 조례규칙심의회(2019. 8. 13.)에서 의결된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9년 9월 27일

삼척시 규칙 제583호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옥내배관 연결지점에서 공공하수도 연결지점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건축법」상 건축 면적에 관계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개인 오수, 우수받이 및 펌프장을 포함한 수용가가 자기의 시설 내에 설치한 배수설비를 말한다.
3. “배수설비 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4. “대행업자”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배수설비 등을 시공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일시사용 신고) ①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사용자가 하수관로를 유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시 소속 공무원이 조사·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허가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 그 허가내용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공사비의 산정 등)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비 산정(算定)은 건설공사 품셈과 시중 물가에 따라 단가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비 산정 시 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설계비와 감리비를 산정하여 용역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공사완료 후 당초 계획했던 물량이 증감할 경우 준공 시 정산한다.

제7조(배수설비 설치신고) 조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에 필요한 점·사용허가 및 지하시설물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이해관계인 동의서(배수설비 설치공사 시 타인의 토지를 점·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배수설비 설치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는 개인배수설비 설치 완료 시 3일 이내에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가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하여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 하수도사용자 등에게 개인 오수받이 관리요령과 개인 압송펌프 장치 관리방법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경미한 공사의 시공) 조례 제8조의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옥내 배수설비공사
2. 배수설비의 오수받이, 우수받이의 설치 및 개수
3.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공사

제10조(대행업자의 지정 및 기간)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 신규 지정을 위하여 15일 이상 공고 후에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대행업자 지정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지정 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배수설비 시공대행업 지정(연장)신청서를 지정 기간 만료 1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교부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대행업자의 지정기준) ①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 또는 시장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 중 지정 공고일 현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로 한다.

② 대행업자의 지정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배출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추가로 지정하거나 줄일 수 있다.

제12조(공사의 시공 등) ①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는 하수도 시설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할 자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2.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함
3.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시공하여야 함
4.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함
5. 공사 시행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시장의 명령에 준수하여야 함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계약일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다.

제13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시장은 대행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공사의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 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될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하자책임) 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는 준공일로부터 2년 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위반처분)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건설업면허 결격 및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요인이 발생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지정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4.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5.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을 지정받은 것이 발견된 경우
6. 해당연도의 배수설비 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지체한 경우
7. 제13조에 따른 재시공 명령 및 제14조에 따른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법령 위반 또는 채무불이행, 계약질서 위반 또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하수도 행정의 신뢰에 큰 손상을 입히는 경우

제16조(개인하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 책임)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개인하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다음과 같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대지의 경계 또는 개인 배수설비 오수·우수받이까지의 옥내 배수설비와 개인 압송 펌프장치는 정기적인 청소 등 유지관리를 하여 하수도의 배출장애 또는 누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2. 설치장소에는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또는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하여 발생한 손해는 개인하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17조(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반영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농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않는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이 아닌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수되지 않은 하수량은 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이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도 기존의 조정량으로 하고 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⑤ 업종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동일한 양수시설로 급수하는 경우의 요금산정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오수발생량이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한다.

⑥ 2호(戶)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 (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원(元)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상수도 가구분할신청에 따라 조정하고, 지하수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가구 분할 조정

⑦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급수 중지 또는 정지 처분된 자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18조(사용료 고지 등)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 고지서는 삼척시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제19조(상수도 급수 이외의 오수배출량 등의 인정 및 조사)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준용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
 - *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3.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②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또는 월 단위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산정

3.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1명당 월 2세제급미터 기준으로 산정(다만, 16.5제급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폴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4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른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에는 시험결과 처리방법을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원인자부담금) ① 조례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개축,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기존 시설 또는 건축물의 하수발생량을 공제한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인·허가 또는 승인하는

부서의 장은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과 미리 협조 및 협의 등을 통하여 인·허가(신고포함) 등을 하여야 하며, 사용검사필증(신고필증 포함)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부서의 장은 해당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 포함) 전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완공 당시의 오수발생량과 완공연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완공연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공고하기 전까지는 전연도의 단위단가를 적용한다.

제21조의2(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등) ① 시장은 해당사업 또는 시설물의 사용승인 전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 발급요청 하는 날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건축물의 준공허가 전 또는 사용검사 전까지 부과금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3회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납 요율은 1회차 50퍼센트, 2회차 및 3회차는 각각 25퍼센트로 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 부과되기 때문에 물권변동 시 체납액 또한 승계된다.

제2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 금액의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면제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면제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면제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 사용료의 10% 감면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사용료 면제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사용료 면제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사용료 면제
8.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보훈단체 :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사용료 면제
9.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사용료의 30% 감면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 감면신청이 되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달부터 사용료의 감면을 적용하며, 공동계량기를 사용할 때에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제24조(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 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 독촉장과 동시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로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제25조(위탁징수) 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는 타 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서

신청인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 번호	
신청 내용	공 사 명					
	사용장소					
	사용기간					
	사용목적					
	공공하수도의 복구방법					
	사 용 수					
배 출 량	일평균		m'	월평균		m'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7.4>

점용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

설치자	법인명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점용목적

(점용기간 :)

장소 및 면적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

공공하수도 복구방법

「하수도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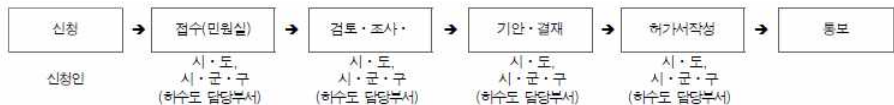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구비서류	설계도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서

신청인	상 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위 치	
-----	--

공사종별	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
------	-----------------------

공사내용	
------	--

급수시설	구 경	m/m	펌프마력		기타	
배 출 량	생활하수	m³/일	사업장폐수	m³/일	기타	m³/일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첨부서류 : 위치도 (약도) 1부

[별지 제4호서식]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 지정(연장) 신청서

신청자	주소			상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보유인력

보유장비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 및 동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시공대행업 지정(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증 사본 1부
 3. 기술자 자격증 사본 1부

[별지 제5호서식]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

주소:

상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전화번호: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을 지정함.

지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삼척시장 (직인)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 지정(변경) 신청서

신청자	주소			상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보유인력					
보유장비					
변경사항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 지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증 사본 1부
3. 기술자 자격증 사본 1부

[별지 제7호서식]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

신청자	관리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신청내용	대표자 성명	업종		전화번호	
	감면사유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별지 제8호서식]

독 축 장

종 목	년 도	월 분	체 납 액					비 고
			하수도 사용료	결정료	부담금	가산금	계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 . .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독축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 하면 「하수도법」 제73조 및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

[별표 1]

구 경 별 출 수 량 기 준 표 (내경)

구 경		최 대 출 수 량 (m ³ /1년)	표준출수량 (m ³ /분)	시간당 출수량	
인 치	1			최 대 m ³ /hr	표 준 m ³ /hr
3/4	20	0.03	0.025	1.80	1.5
1	25	0.06	0.05	3.60	3
1-1/4	32	0.10	0.08	6	4.80
1-1/2	38	0.15	0.13	9	7.80
2	50	0.26	0.20	15.60	12
2-1/2	65	0.45	0.30-0.40	27	18-24
3	75	0.62	0.50-0.53	37.20	30-31.80
4	100	1.20	0.85-1.10	72	51-66
5	125	1.90	1.4-1.70	114	84-102
6	150	2.70	2.40-2.60	162	126-156
7	175	3.80	3.30	228	198
8	200	5	4-4.30	300	240-258
10	250	8	6-7.50	480	360-450
12	300	12	9-11	720	540-660
14	350	16	14	960	840
16	400	21	17-20	1,260	1,200-1,206
18	450	27	25	1,620	1,500
20	500	33	30	1,980	1,800

삼척시 고시 제2019 - 12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27.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가곡천로 2145-8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9. 2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가곡천로 2145-10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가곡천로 2145-8	20190927		20090626	지형지물(가곡천) 명칭활용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산1-7, 1-1, 2-1, 3-1, 3-4, 3-7, 919, 92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140	20190927	건물신축	20090626	맹방해수욕장명칭활용
3	강원도 삼척시 교동 740-7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 79-9 (교동)	20190927	건물신축	20090626	택지지역도로구간내 주요시설 (청솔,석미아파트) 활용도로명
4	강원도 삼척시 당저동 116-4	강원도 삼척시 마달길 355 (당저동)	20190927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기존도로명)
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길 3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길 34	20190927		20090626	행정구역명,위치활용
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07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길 431	20190927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위치활용
7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714-194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적병길 144	20190927	건물신축	20090626	지형지물명칭(적병산) 활용 (미로면하거노리)
8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180-2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하장길 114	20190927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면사무소소재지)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개	8건	8건					
분할	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천로 2145-10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천로 2145-8	20190927		20090626		20090626	지형지물(기곡천) 명칭활동	원덕읍 기곡천로 2145-10에서 분할부여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허맹방리 산1-7, 1-1, 2-1, 3-1, 3-4, 3-7, 919, 92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광범해변로 140	20190927	140	20090626	건물신축	20090626	관방해수욕장 명칭활동	명방비저택명장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교통 740-7	강원도 삼척시 청서로 79-9 (교동)	20190927	34	20090626	건물신축	20090626	백지여도지구간내 주유사설(청동, 석미아파트) 활용도로명	
부여	4	강원도 삼척시 담저동 116-4	강원도 삼척시 마담길 355 (담저동)	20190927	355	20090626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기촌도로명)	
분할	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길 3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길 34	20190927	34	20090626		20090626	행정구역명, 위치활동	원덕읍 임원안길 36에서 분할부여
부여	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07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길 431	20190927	431	20090626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 위치활동	
부여	7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714-194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적병길 144	20190927	144	20090626	건물신축	20090626	지형지물명칭 (적병산)활동 (미로면하거노리)	미로어린이집
부여	8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180-2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하장길 114	20190927	114	20090626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면사무소소재지)	하장면복지회관

삼척시 공고 제2019 - 832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처분 공고

수산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처분하였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삼척시장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처분 내역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면적)	어장의 위치	어업권자	면허기간	연장허가
정치망 어업	제08-1호 (22.5ha)	삼척시 교동(후진) 지선	2명대표 김용수	2009. 10. 14. ~ 2019. 10. 13.	2019. 10. 14. ~ 2029. 10. 13.

삼척시 공고 제2019-842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19.09.26. ~ 2019.10.10.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19.10.11.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박효○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 141-2 목조/초가 (1층:29.75㎡ 주택)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9. 26.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명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성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